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지정 기간: 2025. 8. 28. ~ 2026. 2. 27.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 1) 사업주의 유급휴업·유급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고용보험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60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정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훈련비 단가는 아래와 같다.

-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130%
- 2) (1,000인 미만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80%
- 3) (1,0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70%

다.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지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정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근로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500만원

2) 지원 비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별표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의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정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근로자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한도는 1인당 월 2백만원, 총 2천만원으로 한다.

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정 기간 시작일의 3개월 전부터 지정 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정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할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정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의 용자한도액은 2.5천만원으로 한다.

사.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지정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용자 한도액은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사업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1.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8년 8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적용례

가. 고용유지조치

이 고시에 의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은 지정 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한해 적용한다.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이 고시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은 지정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해 적용한다.

다.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 고시에 의한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지정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적용한다.

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이 고시에 의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한도는 지정 기간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고시에 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수준 면제는 지정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 고시에 의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지정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사.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 고시에 의한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지정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